

July 15, 2014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송신 서비스에 관한 최근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에어리오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2014. 6. 25. 방송사들이 에어리오(Aere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기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에어리오의 클라우드 방송 녹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은 방송과 전송의 전통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저작권법리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¹ 이하에서는 그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과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에어리오는 2012년부터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에어리오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서버 내에 수만개의 작은 안테나를 설치하고 각 안테나마다 한 명의 가입자만 할당했으며(개인 할당 안테나 방식), 공중파 방송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해당 가입자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개인용 콘텐츠 송출 private performance). 또한 가입자는 그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데, 녹화된 프로그램은 그 가입자에게만 할당된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저장되고, 그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그 가입자에게만 전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어리오의 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리오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따라 이루어지고, 자신은 가입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과연 저작권법상 전송(transmission)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1. 1심과 2심 이후에 미국 법무부와 저작권청은 에어리오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 1, 2심 판결의 경과 및 요지

위와 같은 쟁점에 관하여 1심² 및 2심³은, (i) 가입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거나 녹화하도록 지시하면 그 가입자에게만 할당된 저장공간에 개별적인 복제본이 생성되고, (ii) 특정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콘텐츠는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생성된 복제본으로서 다른 가입자는 그 복제본을 전송받아 시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사적 용도의 전송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연방대법원 판결의 요지

1, 2심 판결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에어리오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여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에어리오 서비스가 단순히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케이블 TV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6인의 다수의견은, (i) 에어리오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전송·녹화가 이루어지는 등 케이블 TV 서비스와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차이일 뿐 이로 인해 두 서비스 사이에 본질에 차이가 없음(케이블 TV 서비스도 197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 (ii) 공중에서의 전송은 단지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송신자에 의한 일련의 행위(a set of actions)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iii) 이러한 에어리오 서비스를 ‘공연’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함 등의 이유에서, 에어리오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3인의 소수의견은 에어리오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에어리오 서비스에서 전송의 행위 주체는 개개의 가입자이므로 에어리오 서비스는 전형적인 간접침해(방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간접침해에 따른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다수의견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이러한 소수의견에 따르면, 가입자 개개인의 전송행위는 사적복제 내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에어리오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망 및 시사점

클라우드 기반의 방송 송신 서비스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에어리오를 비롯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판결은 에어리오 서비스와 전통적 케이블 TV 서비스의 기술적 차이점을 다소간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아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 서비스 출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가능합니다.

물론 다수의견은 에어리오 서비스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판결의 취지가 관련 저작물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판결이 외부서버 방식의 콘텐츠저장 서비스(remote stored content)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힘으로써,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제

2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874 F. Supp. 2d 373(S.D.N.Y. 2012).

3 WNET, Thirteen v. Aereo, Inc., 712 F.3d 676 (2d Cir. 2013)

한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비디오 녹화 서비스 관련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어리오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엔탈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컴퓨터와 서버 등 장치를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한 후 이를 당해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의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엔탈서비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장치의 보수·교체 등을 서비스제공자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복제행위의 주체는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제공자'라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972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73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55 | E-Mail. shim@shinkim.com |
| ● 송재섭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49 | E-Mail. jss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EL. 02 316 1773 | E-Mail. shbang@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